

가정상담

1

201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통권 413호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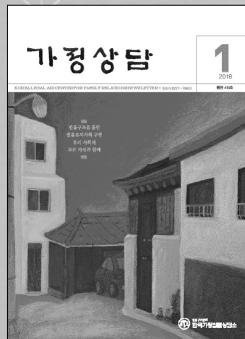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본소는 2017년 12월 17일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19주기를 맞아 광배희 소장 등은 12월 15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였고, 직원들은 상담소 회관 1층 이태영 선생님 부조 앞에서 묵념하였다. (관련기사 28면)



지난 2017년 12월 19일 본소 8층 강의실에서 상담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재교육을 겸한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가 열렸다. (관련기사 28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 4 • 새해 메시지
- 6 • 특집 I |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2 • 특집 II | 미성년자녀 후견
- 22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⑤
- 24 • 가정폭력상담실
- 26 • 인터넷 상담
- 27 • 좋은 책
소년이 온다
- 28 • 상담소 소식
- 30 • 지부 소식
- 32 • 결혼과 인생(179) 만화일기
새해는 그렇게... _ 장차현실
- 33 • 지부소장 새해인사
- 36 • 상담통계
- 37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새해 메시지

모두가 제 자리를 찾는 뜻깊은 한해를 기원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난해는 언제나 다사다난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난 2016년 가을부터 2017년은 우리 현대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엄혹한 사건들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세 아래 북핵위기에서 비롯된 불안한 남북관계, 급변하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로 인해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은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로도 또한 무척 높았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절망과 고통이 그 끝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이 한층 더 성숙하고 도약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의 현실이 궁극적으로 국가 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기약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리는 현실에 발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상담소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삶에 지친 모습 속에서 오늘의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갖게 됩니다.

사회의 불안정성은 곧 가정으로 투영되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감이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과 마찰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상담소 60여년의 역사를 통해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IMF 경제위기 때 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내담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해 끝내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불행한 사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또 이해하면서 한 편으로는 일시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과 제도가 현실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는 그래도 어느 정권보다 더 가정의 행복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보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구호와 보여주기 식 이벤트, 퍼포먼스가 아니라 가족의 가치를 국정의 근간에 놓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인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때에는 기대와 희망 그리고 설렘으로 가득하게 됩니다만 올해는 그 마음이 더욱 각별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기대와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에 맞는 행복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가정과 사회 나라 전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각자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뜻하는 바를 제대로 헤아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모든 가정들을 위한 법률구조기관으로 62번째의 해를 맞이한 상담소는 상담소의 창립이념과 그간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쌓아온 토대를 기반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다운 선구자적 안목으로 날마다 새로이 도약할 수 있도록 상담소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술년 황금개띠 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환한 미래를 기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년 총결산

1월

- 2일 시무식
- 4일 본소 CBS 라디오 광고 녹음 참여/곽배희 소장
- 9-20일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방학 1기 실무수습
- 10-12일 교육부 교원직무연수 '법과 생활' 실시
- 11일 법무부 국제법무과 본소 방문
- 12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평가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3일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



- 18일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본소 방문
-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참석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6일 변호사·법무관 회의

동국대학교 현장실습
사법연수원 전문분야 실무수습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본부 총 상담 6,474 건

2월

- 1일 CBS FM에서 본소 최초 라디오 광고 시작
- 2일 이훈전 교육동영상 제작 심사위원회
- 6-17일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방학 2기 실무수습
- 8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및 직원재교육



- 9일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보현의 집)
/정연이, 전규선 상담위원
- 10일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총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이훈전 교육동영상 제작회의
- 14일 가정법원 방문 및 성백현 신임 가정법원장과 환담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1일 한부모가정을 위한 일일교육
- 23일 정기 전기 이사회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부부갈등과 상처(아픔)' /김병후 원장

동국대학교 현장실습
이화여대 재학생 직무체험 연수

본부 총 상담 6,724 건

3월

- 1일~5월 31일 송현정, 이창현 변호사 자원봉사
 2일 서울회생법원 개원식/곽배희 소장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착수
 세미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13~27일 이훈 전 교육 동영상 구성회의
 16일 '성년후견 실태의 필요성과 과제' 심포지엄



- 21일 폭력예방교육(공내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22일 폭력예방교육(부천초등학교)/황현정 변호사
 23일 정기총회
 폭력예방교육(국수중학교)/김진영 상담위원
 24일 폭력예방교육(대전정보산업고등학교)
 /조은경 상담위원
 28일 폭력예방교육(비봉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상담소 홍보영화 인터뷰촬영/곽배희 소장
 29일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관리원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30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뇌의 속성과 다름' /김병후 원장
 폭력예방교육(하길초등학교)/차연실 상담위원
 31일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자문위원들과
 수서경찰서 현장방문/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31~4월 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와
 아기랑 행복나들이' 캠프



본부 총 상담 7,057 건

4월

- 본소, 가정폭력예방지침서 |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수정 보완 및 재발간
 본소, 「소송구조사례집」(제3집) 발간

- 4일 본소, 법무법인 로고스, KEB하나은행과
 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 폭력예방교육(안양초등학교)/최수진 상담위원
 5일 폭력예방교육(여주 점동초등학교)/김진영 상담위원
 6일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여의도 봄꽃축제)
 10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폭력예방교육(용인 대일초등학교)/정연이 상담위원
 11일 폭력예방교육(연천 왕산초등학교)/김진영 상담위원
 14일 서울시와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및 실무종사자
 교육' 실시/정연이, 전규선 상담위원
 18일 폭력예방교육(용인 한일초등학교)/정연이 상담위원
 20일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성폭력 법률구조사업
 평가회/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북미영 상담위원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보현의 집)
 /정연이, 전규선 상담위원
 본소,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과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협약(MOU)
 24일 서울가정법원 이훈가정 면접교섭센터 개소식
 /곽배희 소장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6일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정책자문위원 간담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8일 폭력예방교육(포천 이곡초등학교)/오동준 공익법무관

본부 총 상담 5,681 건

5월

- 10일 온누리 호스피스 대상 법교육/조은경 상담위원
- 11일 강서자활지원센터 가족법교육/정연이 상담위원
- 15일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가족법과 가정폭력 특별법' 강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6일 본소 홍보 영화 및 이혼전 교육 동영상 촬영
/곽배희 소장
- 19일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직원을 위한
가족법강의/복미영 상담위원
- 20일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과천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22일 인천가정법원 방문 및 신임 안영길 가정법원장과 환담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5일 본소 홍보 영화 및 이혼전 교육 동영상 촬영
/곽배희 소장
- 26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관계의 뇌와 사랑'
/김병후 원장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보현의 집)
/정연이 상담위원
- 27일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관악구청 다문화가족박람회)



- 31일 이화여대 제131회 개교기념식 및 제16대 총장 취임식,
오찬 참석/곽배희 소장

본부 총 상담 6,998 건

6월

- 14일 서울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폭력예방교육(수원하이텍고등학교)/조은경 상담위원



- 15일 이천가정성상담소 권이금자 대표와 이영실 소장
본소 방문
- 16일 인천지부 권오용 소장 본소 방문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방문 및
환담/곽배희 소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19-30일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방학 1기 실무수습
- 21일 구리지부 주최
'여성주간 기념 구리시 양성평등 시민교육' 강의
/조경애 상담위원
- 22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분노의 의미와 기능'/김병후 원장
- 22-23일 제44회 '나, 너, 그리고 우리-행복찾기 부부캠프'
- 23일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기념: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심포지엄



- 26일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전문가 위원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강서자활지원센터 가족법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30일 한국가족법학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개최
하계학술대회/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본부 총 상담 7,404 건

7월

- 3일 폭력예방교육(신도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조은경 상담위원
- 3-14일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방학 2기 실무수습
- 3-26일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및 사회복지전문대학원생
임상실습
- 4일 본소 임상 및 실무수습 로스쿨, 사회복지학생들과
면담/곽배희 소장
- 5일 '찾아가는 과천시 여성가족정책토론회'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가족법의 현주소와
과제' 주제발표/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6일 폭력예방교육(당촌초등학교)/김민선 변호사
- 7일 서울가정법원 성견후견센터 개소식
/곽배희 소장
- 11일 군산지부 30주년 관련 축사 동영상 촬영
/곽배희 소장
- 12일 서정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실습지도교수 본소 방문
-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법률구조체험교육
(가재울중학교)
- 14일 중앙일보 기획 '헌법재판소 30주년 기념 주요한
30 판결' 관련 '호주제 폐지 이후 사회변화' 주제
인터뷰/곽배희 소장
- 19일 김혜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본소 방문
- 22-2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와 아끼랑
행복나들이' 캠프
- 25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가정폭력가해자 개입모델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연구 중간보고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동국대학교 현장실습
이화여대학교 현장실습

8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설 역사 전시실 개관

- 'Since 195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



- 1일 김동규 공익법무관 부임
- 21일 폭력예방교육(송의여자중학교)
/최수진 상담위원
- 23일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및 상담원 본소 방문
- 24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김병후 원장
- 25일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보현의 집)
/정연이 상담위원
- 26-2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한마음 가족캠프



- 29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II」 개강
/곽배희 소장
- 30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파산면책사건 법률구조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정연이, 전규선 상담위원

동국대학교 현장실습
이화여대학교 현장실습

본부 총 상담 7,441 건

본부 총 상담 7,791 건

9월

본소, 상담소 홍보 이혼 전 상담교육 동영상
「이혼, 어떻게 할까요」 제작·보급,
상담소 홍보 영화 수정·보완 후 새로 제작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30주년 기념행사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9일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14일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NH주거복지컨퍼런스)

15-1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나들이' 캠프

19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Ⅱ」에서
상담소 중심의 법률구조 역사 주제 강의
/곽배희 소장

포항시민을 위한 가족법 강의/복미영 상담위원

20일 폭력예방교육(강서공업고등학교)
/조은경 상담위원

22일 이정식 사장 초청, '민족 수난사와 함께 한 우리 가족'
주제로 직원 및 자원봉사자 재교육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위촉식 참석/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8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마음의 상처'/김병후 원장

10월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법률구조체험교육
(신목고등학교 인권동아리 학생 및 교사)

16일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보현의 집)
/전규선 상담위원

17일 폭력예방교육(강서공업고등학교)
/복미영 상담위원

19일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시민사회단체 연구수요 간담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폭력예방교육(동일중학교)

/조은경 상담위원

20일 인천 송도지부 설립 준비 중인 이영미 소장 예정자,
정영근 변호사 본소 방문

26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자기보호를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공포'
/김병후 원장

26일 문득현 공익법무관 부임

27일 성남지부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격려사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자원봉사자 모임 및 재교육(창덕궁)

양육비이행관리원 주관 업무협력기관 사례발표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황현정 변호사,

정연이 상담위원

2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법률구조체험교육
(동일중학교 2학년 및 교사)



31일 제4회 윤후정 통일포럼

/곽배희 소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서울영등포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여성·청소년
분과위원회/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본부 총 상담 5,812 건

본부 총 상담 5,946건

11월

본소, 대법원 2008.11.20. 선고 22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제사주재자 결정 및 이에 따른 유체인도 등의 판례변경과 관련
한 기획소송 진행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

1일 강서자활지원센터 가족법 및 파산,면책 강의
/조은경 상담위원

3일 본소 창립61주년 기념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심포지엄



6일 삼성생명 임직원 본소에 디퓨저 1000여개 기증

9일 본소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자문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10일 한국가족법학회 참석/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주최
'가정폭력범죄의 현실과 대응방안' 학술행사 토론발표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1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법률구조체험교육
(숙명여자중학교 2학년 및 교사)

13일 전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가족법강의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15일 정기 후기 이사회

16일 서울시와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정연이, 전규선 상담위원



서울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회의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1일 정동교회 뱀엘대학 가족법 강의/곽배희 소장

22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27일 강서자활지원센터 가족법 및 파산,면책 강의/
/정연이 상담위원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30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친밀감, 관계의 유형 및 심리적 거리' /김병후 원장

본부 총 상담 7,014 건

12월

2일 라오니캠프

4일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회의
/복미영 상담위원

15일 이태영 선생님 19주기 추모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보현의 집)
/전규선 상담위원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의/복미영 상담위원
18일 중앙가정위탁자문회의
/최수진 상담위원, 김민선 변호사

19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28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외도의 유형과 대처' /김병후 원장

29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7년 사업평가회
종무식

본부 총 상담 5,858건

최정아 사서 | 편집부

친권자가 장기간 소재불명인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개시 여부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가 있는 경우에 친권 상실선고를 거치지 않고도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곧바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먼저 친권상실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상 분명하지 않다. 민법 제928조¹⁾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개시 사유로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생존해 있다면 형식적(법률상)으로는 친권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바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는 없으며, 제924조에 따라 먼저 친권 상실선고를 한 후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927조의2 규정을 보면 이와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 규정은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친권의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 등을 받아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부모의 다른 일방(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이 어떻게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친권자지정청구가 없거나 친권자지정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선임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다른 일방은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이는 단독친권자에

1) 이하에서 민법조문은 별도로 민법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따라서 민법 제927조의2 규정에 의하면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후견인선임청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거쳐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굳이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문제는 친권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친권상실선고의 필요가 있는 때에도 일정한 자의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제924조에 의하면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자로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은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친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대개 자녀의 친족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개인의 시간과 비용, 수고를 요하는 친권상실선고의 청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도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성년자녀가 당사자로서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것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으로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현실에 있어서는 친권상실선고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친권자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권자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친권의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복리는 침해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친권자

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하여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현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청구를 하는 것이 현행법상 해석론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한 후,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실제 사례 - 가정위탁의 경우

미성년자녀에게 형식적으로는 친권자가 있으나, 실제로는 소재가 불명할 뿐만 아니라 연락도 되지 않아서 친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특히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정위탁이란 부모가 빈곤, 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가정에 임시로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위탁가정에 맡긴 후에 소재가 불명해지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자녀(위탁아동)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²⁾ 이런 경우 위탁아동에게는 법률상으로는 친권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친권자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친권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친권의 공백상태는 특히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위탁아동이 해외로 수

2) 2015년 현재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위탁양육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527명이다.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5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2016), 40면.

3) 대구가정법원 심판 2016. 9. 27. 2016ㄴ단100177.

학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여권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곤경에 처한 경우도 있다. 한편 장기위탁의 경우에 위탁부모는 보통 5년 이상 위탁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게 되는데, 위탁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어떠한 권한(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위탁아동을 실제로 보호,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에게는 보호자로서 아무런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부모는 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순된 상태는 결국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탁아동을 장기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를 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으나, 가정법원에서는 후견개시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친권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³⁾ 이 심판의 논리에 따르면 위탁아동의 부모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위탁부모에게는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이 없어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다. 친권상실선고 청구권자에 포함되어 있는 자녀의 친족도 찾을 길이 없었고, 그 외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친권상실선고의 청구를 부탁하는 방법도 현실성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이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탁부모가 강력히 반대하여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결국 위탁부모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제932조). 이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위탁아동 갑은 아버지 을과 어머니 병(성명 등 인적사항

불명) 사이에서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으나, 출생 직후 거리에 유기되었으며, 경찰에 의해서 영아원에 인도되어 그곳에서 보호를 받았다. 약 4개월 후 부모인 을과 병이 영아원에 찾아와 다시는 아이를 유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갑을 데려갔으나, 그 후 병은 가출하고 을은 약 두 달 후 다시 갑을 유기하였다. 갑은 만 4세가 되던 해 보육원으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동안 부모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갑이 만 5세가 되었을 무렵부터 정은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던 갑을 후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말에는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며 돌봐주었다. 정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 2년여 동안 갑을 후원하다가 구청에 가정위탁을 신청하여 갑의 위탁부모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지금까지 갑을 양육하고 있다. 정이 가정위탁을 신청하였을 때 구청 소속 복지담당공무원이 갑의 아버지 을을 찾아서 가정위탁 동의서를 받았으며, 정과 을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갑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여 을에게 갑을 한번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갑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중국으로 단체여행을 가게 되어 여권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권발급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갑의 아버지 을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시청공무원의 도움으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겨우 여행을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갑과 정 모두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정은 갑을 입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갑의 아버지인 을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입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갑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친부모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지만, 위탁부모에 대해서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학업성적도 우수한 편이다. 위탁부모인 정은 갑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갑을 대리하여 휴대폰을 개설해 줄 수도 없고, 갑의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 수도 없다. 또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도 단수여권밖에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경유지를 거치는 비행기는

3) 대구가정법원 심판 2016. 9. 27. 2016노단100177.

탈 수가 없다. 만약 갑이 급히 수술을 받을 일이 생겨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권도 갖지 못한다.」⁴⁾

대구가정법원은 위탁부모 정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는데, 주문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려면 친권자가 없거나,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은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 심판은 위의 사례에서 갑에게 친권자로서 을이 생존해 있고, 을이 친권상실신고나 친권의 일시 제한 또는 일부제한의 신고 등을 받은 바 없으므로, 후견이 개시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심판의 취지에 따르면 위탁부모 정을 갑의 후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을을 상대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에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심판이 전제로 하고 있는 이러한 법리가 타당한 것인가, 또는 우리 민법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친권자의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후견개시의 독립적인 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III. 친권자의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견개시 여부

1.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의 취지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등)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의 일시 정지 또는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은 미성년자녀에게 친권의 공백상태가 발생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유로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친권자가 친권의 일시 정지 선고를 받은 경우(제924조),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를 받은 경우(제924조의2),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제925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제927조 제1항)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녀에게 친권의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의 제928조에서 열거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928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친권의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유로서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4) 이상의 사실관계는 소장과 진술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2. 친권자의 소재불명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친권소멸의 원인으로 규정한 제927조의2 제1항

(1) 제927조의2는 2011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해서 신설되었는데,⁵⁾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친권자가 된 父 또는 母⁶⁾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하여 새로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민법일부개정 전에는 친권자의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친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었으나, 학설과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 친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대판 1956. 8. 11. 4289민상289; 구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0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모두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후견이 개시되므로, 민법에 정해진 후견순위에 따라 후견인으로 될 사람이 친권자의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면(예: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이장, 통장, 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 전에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민법」 제937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위와 같은 서면 등)을 첨부하여 다음 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법정후견제도를 폐지하는 개정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7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2011년 개정민법은 기존의 판례와 학설을 명문화하여

친권자의 소재불명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친권소멸의 원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2)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위탁아동이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다면,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출생신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母가 친권자가 될 것이다. 그 후에 父가 인지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인지의 효력이 있다)⁷⁾ 부자관계가 발생하므로, 父도 친권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다(제909조 제4항 본문).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하지 않고,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하지도 않는다면(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일단 부모 쌍방이 공동친권자가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탁아동의 부모(을과 병)는 일단 공동친권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母는 자녀가 만 1세가 될 무렵부터 그 행방을 알 수 없었고, 父도 그 후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친권자 쌍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제927조의2 제1항 제4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후견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의 체계와 자녀의 복리

5) 법률 제10645호, 공포일자 2011. 5. 19, 시행일 2013. 7. 1.

6)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모의 일방이 단독친권자로 정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i)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부모의 일방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제909조 제4항, 제5항). ii)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나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에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부모의 일방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제909조 제4항, 제5항). iii) 위와 같은 사유로 부모의 일방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후에 친권자변경청구에 의하여 다른 일방이 단독친권자가 될 수 있다(제909조 제6항).

7) 이 사례에서는 갑의 아버지 을이 출생신고를 하였다(당시 어머니 병의 인적사항은 불상으로 신고 되었음).

에 부합하는 해석론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탁부모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제932조 제1항).

3.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위탁아동의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정해졌던 경우

(1)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탁아동의 부모 중 아버지가 단독친권자가 된 경우를 가정해 본다(제909조 제4항 본문). 즉 위의 사례에서 위탁아동의 아버지(갑)의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을과 병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을이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경우를 가정해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단독친권자가 된 아버지(갑)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되어 다른 부모의 일방(母), 미성년자녀, 미성년자녀의 친족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927조의2 제1항에 의한 제909조의2 제1항의 준용). 위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녀, 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27조의2 제1항에 의한 제909조의2 제3항의 준용).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위탁아동 갑의 아버지(갑)가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단독친권자로 정해졌다고 가정해 본다면, 다른 부모의 일방(병), 자녀와 자녀의 친족은 을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병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

런데 위탁아동의 친권자 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소재불명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한 친권자 지정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위탁부모 정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갑의 아버지(갑)가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단독친권자로 정해졌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위탁부모 정이 후견인선임청구를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가정법원은 위탁아동 갑의 복리실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될 것이다(현실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위탁부모 정 이외에는 후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2) 한편 위의 2. (2)에서 위탁아동 갑의 부모 을과 병이 공동친권자가 된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서술하였으나, 이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일단 을과 병의 공동친권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어머니 병은 갑이 만 1세가 될 무렵 가출하여 그 이후 소재불명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무렵에 이미 친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갑의 아버지는 母 불상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母에 대한 신상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갑의 아버지(갑)가 출생신고를 할 무렵에는 을과 병이 동거를 하고 있었으므로, 병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母로 기록되지 않은 생모에게 당연히 친권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모자관계는 해산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母는 일단 친권자가 된다고 해석하더라도 母에게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권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⁸⁾ 이러한 해석론에 따르면 갑의 부모 을과 병은 일단 공동친권자로 되었다가 그 후 병의 친권이 소멸함

8) 대판 1956. 8. 11. 4289민상289; 구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0호. 이 예규는 공동친권자 또는 단독친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친권의 소멸이 의제되어 법정후견인이 개시된다는 내용이지만,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친권자 중 1인이 소재불명인 때에도 해당 친권자의 친권은 소멸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으로써 을이 단독친권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엄격하게 본다면 을은 병과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즉 제909조 제4항에 의해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제927조의2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⁹⁾ 그러나 제909조의2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제927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¹⁰⁾를 고려해 보면 위탁아동 갑의 사례에 대해서도 이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927조의2는 i)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부모의 일방이 단독친권자로 정해지고, ii)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일방이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단독친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제927조의2는 본질적으로 친권의 공백상태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단독친권자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일방이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단독친권자로 정해졌는가, 또는 다른 이유로 단독친권자가 되었는가는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등 중요하지 않다. 단독친권자로 되었던 부모의 일방이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친

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할 뿐이다.

또한 제927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친생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탁아동 갑의 母인 병에게도 친권자 지정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보호에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대안으로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위탁아동 갑의 부모 을과 병의 공동친권이 성립하였다가 그 후 병의 친권이 소멸하여 을이 단독친권자가 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 사례에서 제927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3) 위의 (2)에서는 위탁아동 갑의 부모가 일단 공동친권자가 되었다가 母 병의 친권이 먼저 소멸하고, 이로써 父 을이 단독친권자가 되었다가 역시 소재불명을 이유로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전제하고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 대구가정법원은 위탁아동 갑의 부모가 친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설령 위탁아동 갑의 부모가 형식적으로 친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러한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위탁아동의 부모가 형식적으로 공동친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든, 협의나 심판에

9) 제927조의2에 따르면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909조의2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예컨대 혼인외의 자의 부모 중 일방이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단독친권자로 정해졌는데, 그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 자녀, 자녀의 친족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친권자지정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0) 제909조의2와 제927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중 일방이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가 되었다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신속하게 자녀의 법정대리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부모의 다른 일방에게 친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그가 친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의해서 그 중 일방만이 단독친권자가 된 경우이든,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즉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형식적으로 공동친권이 유지되고 있으나 사실상 친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와 단독친권인 상태에서 사실상 친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중요한 것은 친권자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사안① 위탁아동의 부모가 형식적으로 공동친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둘 다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②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다른 법리를 적용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협의나 심판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父 또는 母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제927조의2 제1항에 의해서 준용되는 제90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공동친권자인 부모 쌍방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내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¹¹⁾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친권자 지정 청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즉 제927조의2 제1항에 의해서 제909조의2

제3항만이 준용된다).

IV. 입법론적 해결방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가 위탁가정에 자녀의 양육을 맡긴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형식적으로 친권자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서 자녀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주로 이런 위탁가정에 집중되어 있다.¹²⁾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의 고충사항을 접수하여 정리한 사례를 종합해 보면, 그 중 상당수가 위탁아동의 친권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2009년에 발간된 「가정위탁 법률지원 매뉴얼」 중 법률 사례 참조).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에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위탁아동과 관련된 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미 2006년에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한 적이 있으며,¹³⁾ 이를 기초로 2012년에 다시 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¹⁴⁾ 이 법안은 위탁아동의 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었으나(제16조-제18조),¹⁵⁾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폐기되고 말았다. 위탁아동의 친권과 관련된 문제

11) 제927조의2 제1항 본문은 양부모(일반양자의 양부모) 쌍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부모의 친권이 소멸한다는 전제하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2015년 현재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위탁양육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527명이다.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5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2016), 40면. 한편 2015년 현재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위탁아동의 수는 13,721명이며, 이중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의 수는 990명이다.

13)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보호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제안(자료집, 2006)에 수록되어 있다.

14)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2683, 제안일자 2012. 11. 20)

15)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이 법안의 자세한 해설에 대해서는 김상용,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 해설, 가족법연구 IV, 2014, 193면 이하 참조).

제16조(친권행사의 정지 등) ① 가정법원은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친권행사의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의 입법적 해결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가정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입법적 해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부모들은 현행법의 틀 내에서 소송을 통하여 위탁아동의 친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률구조를 결정함으로써 위탁아동의 친권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던 위탁부모들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는 전국적으로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¹⁶⁾ 그 중 처음으로 심판을 한 대구가정법원은 위에서 본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심판이 전제로 한 법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결국 이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석론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기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 민법체계와도 부합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이 민법 제928조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1.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1년 이상 위탁아동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친권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을 남용하여 위탁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의 정지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검사의 청구에 따라 위탁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친권행사의 정지 기간 중에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행사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위탁아동의 후견인이 임무수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대리권, 관리권 행사의 정지) ① 가정법원은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행사의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6조 제2항과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조(임시처분) ①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6조의 친권행사의 정지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의 청구가 있을 때부터 48시간 내에 부모의 친권행사 또는 후견인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이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가정법원이 제17조의 법률행위의 대리권, 재산관리권 행사 정지의 임시처분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임시처분은 집행력을 갖는다.

16) 위탁부모가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고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한 이유는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위탁아동을 청구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위탁부모들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위탁아동이 재판에 관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928조 개정시안(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V. 맺음말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되어 새로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927조의2 제1항). 미성년자녀에게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쌍방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

다. 나아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이와 다른 경위로 단독친권자가 된 부모의 일방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독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가, 혹은 공동친권자인 부모 쌍방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또한 어떤 경위로 부모의 일방이 단독친권자가 되었는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점은 친권자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모두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하여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는 후견이 개시될 수 있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는 후견이 절대로 개시될 수 없다는 의미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한편 법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제928조에 후견개시 사유로서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 민법체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 (5)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재정후원활동의 본격화

1966년 8월 25일 창립 10주년 기념식

1970년 8월 국제법률구조협회 회원으로 가입, 이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발전의 길을 열다

1966년 8월 25일 상담소는 총 상담 13,156건을 기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YWCA 강당을 300여명의 축하객이 가득 메웠다. 표경조 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상담소 사업이 사회의 시대에 요청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도록 끊임없는 협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상담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418권의 도서를 기증함으로써 여성문제도서관 설립을 위한 상담소의 장기적 계획 추진에 큰 도움을 준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대표와 여러 해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은 수도여자사범대학 최옥자 부학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설립 이후 10년이 흐른 시점이었지만 상담소의 운영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설립 초기에 비해 일은 더 많아지고 사회적 요구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상담소의 운영비용에 비해 이를 지탱할 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태영 소장은 이날 사업보고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상담소 사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 이태영 소장이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이후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당시 이양구 동양시멘트 사장(10인 클럽 이관희 회원의 부군)의 기부를 시작으로 10인 클럽의 발족과 함께 상담소 운영의 기초를 제공해준 재정후원 활동이 자리 잡게 되었다.



▲ 창립 10주년 기념식 후 10인 클럽 및 직원들의 기념촬영





반세기를 함께 살아온 부부의 갈등, 가정폭력 상담 통해 화해의 실마리 찾아

사건번호 2016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6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1회 등 총 23회 실시

상담기간

2017. 2. 1. ~ 2017. 7. 27.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 전배우자와 이혼 후 1년간의 교제 끝에 재혼한 사실혼부부로 결혼한 지 1년 되었다. 부부 모두 학원강사로 재직 중이다. 행위자의 전혼자녀들은 양육 하던 전배우자가 2년 전 사망한 이후 외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다. 피해자의 전혼자녀들은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었고 부부 결혼 이후 함께 살고 있다. 부부는 결혼후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으며 2016년 5월 사건 당일,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교제할 때부터 말을 쉬지 않고 퍼붓는 기질이 있어 상호 이해의 시간을 더 갖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으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 피해자의 잔소리가 더 심하였고 문제가 생기면 밤새 잠을 재우지 않고 공격을 하여 갈등을 겪었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우울증 병력과 습관적인 폭언을 갈등의 원인이라고 꼽으면서 자신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폭언을 막기 위해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은 사건 이후 합의 하에 2016년 12월부터 별거를 하고 있지만 주말마다 교회에서 만나며 피해자가 행위자의 오피스텔을 방문하는 등 교류가 있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고성과 폭언을 줄인다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였고, 장차 피해자와 함께 학원 사업을 할 계획도 있다고 하였다.

중결상담에서 피해자는 행위자와 별거하는 이유는 부부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위자가 결혼생활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적응을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고,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확실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

화를 인정하였다. 행위자는 별거하면서 사생활이 보호되고 충돌이 줄었다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하였고, 재결합을 위해서는 사생활 보호와 인격 존중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부부는 서로 존엄을 유지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존엄을 유지해주는 관계가 건강하고 바람직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관계유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 대안으로서 본인의 행동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지 못할 경우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6버 2***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7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5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7회
부부상담 1회 등 총 31회 실시

상담기간

2017. 2. 2. ~ 2017. 7. 27.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47년 되었으며 부부사이에 2남 3녀(46세, 43세, 42세, 40세, 35세)가 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상의 없이 딸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계획을 세워 추진하자 이를 말리던 중 2016년 8월 사건 당일, 이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딸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 보호처분과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초상담에서 집 명의자인 피해자가 집을 매도하고 자녀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지만 결국 피해자의 의견을 따랐고 피해자

의 고집이 세서 충돌하는 것이며 현재는 화해하여 잘 살고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결혼생활 내내 행위자의 고성과 폭언으로 고통 받았고, 지금도 행위자가 가사와 생활비를 전혀 분담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였다.

부부의 연령,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부부가 함께 집단 상담에 참여하여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가 외손자녀 양육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함께 상담에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하여 행위자만 단계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행위자의 상담이 상당히 진행된 후 피해자에게 행위자의 태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변화한 것으로 보이다가도 이전처럼 고성과 폭언을 반복하기도 하여 피해자 스스로 참으며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노력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하여 답답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부부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행위자와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행위자가 진심으로 폭언과 폭력을 반성하고 사과할 것과 자신을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해주시기를 원했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과거의 폭언, 폭력에 대하여 사과하고 향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사과해 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행위자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행위자 상담 종결 1달 전부터 피해자가 일을 하게 되어 행위자와 같이 지낼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었고 부부가 충돌할 기회 자체가 줄었다. 행위자는 밥하는 법을 배워 직접 식사를 해결하고 청소도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보내면서 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사이도 좋아졌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밥을 해먹는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점에서의 변화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행위자의 폭력이 재발하지 않은 점, 가사 분담 등 이전에 비하여 개선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해주면서 향후 더욱 개선되는 상황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인·터·넷·상·담

Q

25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한명을 두었으나, 아내는 15년 전 가출하여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아들을 키우며 일을 하느라 그동안은 아내와 법적인 이혼을 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자 아내와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저도 아내와 만나 3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내년 8월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주위에서 들리는 말로는 아내가 제 국민연금의 절반 정도를 나누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함께 살지도 않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아내가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A

현재 시행 중인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자 2015헌바182 결정으로,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데,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

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8. 6. 30.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위 조항을 계속 적용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중 혼인 기간에 대하여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법률은 2018. 6. 20.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법 개정 이후인 2018. 8.에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귀하로서는, 배우자가 가출하기 전 실제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을 전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소년이 온다

한강 장편소설 2014, 창비

이 책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년이 흐른 1982년, 아버지가 광주에서 사진첩 한 권을 가져왔다. 증언을 위해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비밀리에 만들어 유통시켰던 책이었다. 이때의 기억을 나는 『소년이 온다』의 에필로그에 이렇게 썼다.

그 사진집을 아버지가 집으로 가져온 것은 이년 뒤 여름이었다. 누군가를 조문하러 그 도시에 내려갔다가 터미널에서 구했다고 했다. (...) 어른들끼리 사진집을 돌려본 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그 책을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안방의 책장 안쪽에, 책 등이 안 보이게 뒤집어 꽂아놓았다.

내가 몰래 그 책을 펼친 것은, 어른들이 언제나처럼 부엌에 모여앉아 아홉시 뉴스를 보고 있던 밤이었다. 마지막 장까지 책장을 넘겨, 총검으로 깊게 내리쳐어 으깨어진 여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을 기억한다. 거기 있는지도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내 안의 연한 부분이 소리 없이 깨어졌다. (198~99면)”

1장의 화자인 ‘너’는 중학교 3학년, 아직 소년이다. ‘너’는 상무대에서 시신을 닦고 초를 켜다. 이렇게 이 책은 어느 어머니의 막내 아들, 그 아들의 친구와 친구 누나 그 친구 누나가 아는 언니들, 다시 그 아들이 만난 형과 누나 그리고 작가 자신이 겪은 그 해 5월 광주의 이야기다. 같이 배드민턴을 치고 웃던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공장에 다니며 또래보다 작은 동생을 위해 어려운 형편에 배달유를 시켜 동생을 먹이던 그의 누나는 그곳에서 학살당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모진 고문을 겪고 감옥을 거치면서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되었고, 돌아온다던 아들의 말을 믿고 먼저 집에 돌아온 어머니와 작은 형은 ‘그 쏘만한 손잡아 데려오지 못했기에’ 살아

도 죽은 것 같은 날들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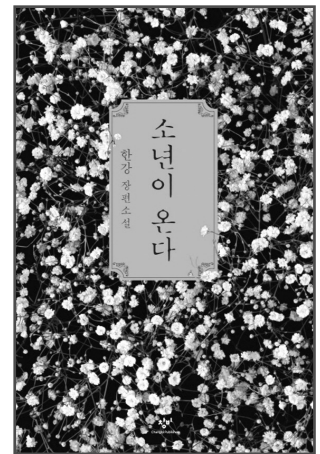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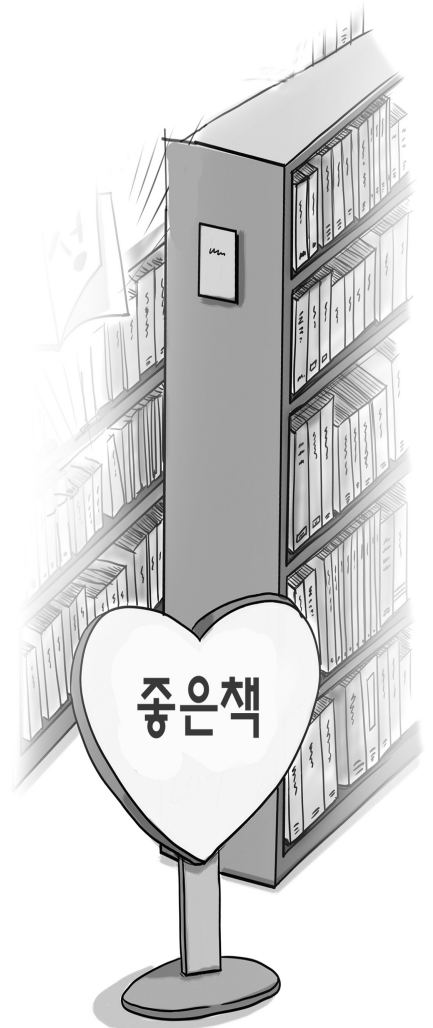
그 해 광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죽음보다 못한 삶을 그저 견디고 있다.

지난 해 봄 북한산 둘레길을 걷다가 ‘꽃이 예쁘구나, 봄은 정말 좋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5월이 예쁘다니, 세월이 무섭구나.’ 1985년 5월 말의 어느 날, 거리는 꽃가루와 최루탄의 흔적이 뒤섞여 어지러웠고, 최루탄 냄새가 가시지 않는 학교 정문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오랜 만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며 올라다 본 가로수의 새 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순간 생각했다. ‘앞으로 내 생애 아름다운 5월은 없을 거야.’ 그렇듯 오월은 곧 광주와 동의어였고 ‘핏빛 오월’일 뿐이었다.

수많은 대자보와 숨어서 돌려보던 사진들과 비디오, 김남주의 시와 임철우, 홍희담의 소설과 황석영의 기록으로 알게 된 ‘광주’는 나와 내 여러 친구들에게 삶의 한 기준이 되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도청에 남았던 윤상원과 감옥에서 단식으로 죽어간 박관현을 조금 더 있으면 내 아이가 그 나이가 되는데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살아온 건가.

오랜만에 광주를 정면으로 다룬 책을,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정성이 담겨있는 책을 읽었다. 5월의 핏빛 기억이 조금은 가셨다 해도 광주는 앞으로도 여전히 조금은 덜 비겁하고자 하는 내 삶의 기준일 것이다. 맨부커상 수상자인 작가 한강은 이 책으로 지난 해 10월 이탈리아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말라파르테상을 수상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상·담·소·소·식



종무식 및 시무식

상담소는 지난 해 12월 29일 전 직원이 함께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가졌다. 이 날 종무식에 앞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7년 사업평가회를 열고 지부 소송구조, 비혼모캠프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등 사회공헌위원회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1월 2일에는 시무식을 가지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본소 광배희 소장은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고, 시무식에서는 '본입이도생(本立而道生)'을 설명하며 창립 62주년의 해를 맞는 상담소가 걸어온 길처럼 올 한해도 상담소 구성원들이 법률구조의 근본을 확고히 세우고 한마음으로 법률구조 사업의 사회적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가일층 충실하자'고 격려하고 당부하였다.



이태영 선생님 19주기 맞아 국립현충원 방문

2017년 12월 17일 19주기를 맞이한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12월 15일 상담소 직원들은 아침 회의 시간에 조출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광배희 소장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였고, 직원들은 상담소 회관 1층 이태영 선생님 부조 앞에 서 묵념하였다.

(관련사진 2면)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겸 직원 재교육

지난 2017년 12월 19일 본소 8층 강의실에서 상담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재교육을 겸한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 및 교육은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용 교수의 '개정 친생추정 조항에 대하여' 본소 김민선 변호사의 '인지청구의 소 제척기간의 문제 및 유해인도 사건' 현소혜 교수의 '집행법으로서의 「가사소송법」 개정 : 특히 사전처분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과 해석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발표 후에는 주제와 관련하여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2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일 캠프, '라오니 캠프' 개최

본소에서는 2004년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을 신설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월 1회 모임에서 확장한 캠프 일정을 추가하여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심리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오니 모임'은 '즐거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순한국말로, 힘들었던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 평등한 부부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와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지난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상담소에 모인 가정폭력 피해여성 18명에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본소 소개 및 라오니 캠프의 취지를 전달하였고, 이어서 우애령 박사의 '내 마음의 집짓기'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통해 나와 배우자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행복한 내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장소를 이동하여 뮤지컬 '타이타닉'을 관람하였다. 문화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가정 내에서 서로의 입장과 욕심만 내세우다가 가정이라는 배가 침몰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저녁식사를 하면서 평가회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캠프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는 경험의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소에서는 2018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을 기존의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려 진행할 예정이다.



본소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매달 넷째 목요일, 3시~5시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을 초청하여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지난 12월 28일 올해의 마지막 강의를 있었다. “친밀한 관계의 유지”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는 부부, 부모,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70여명이 참석하였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내년 강의는 1월 25일 (목)로 예정되어 있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 12.15. 보현의집 노숙인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 전규선 상담위원
- 12.15. 종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복미영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박소연, 정다혜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문득현, 김동규 법무관

조은경 상담위원은 2017년 12월 12일 신용회복위원회(김운영 위원장)로부터 노숙인 및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곽배희 소장,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12월 4일 본소를 방문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현 이사장과 법률구조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6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상담소에서 홍보전문업체 베리 모먼트 최성희 부사장 등과 2018년도 상담소 홍보 기획 회의를 가졌다. 12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와 만찬에 참석했다.



● ● ● 고맙습니다

2017년 12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권지연,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경수현, 김수운, 김영주, 김지후, 김형석,
박소영, 박수열, 박은정, 윤원섭, 이혜민, 임주영,
전현정, 진보라, 홍수아, 황미옥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심미숙, 이승주, 장철진, 진보라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임채룡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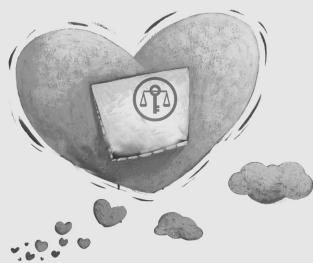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남서연, 마운지, 박주연, 이민주, 강수지, 김현지,
김혜림, 김혜정, 배준모, 이회현, 정세욱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김용덕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강릉지부

관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6회(739명) 실시하였다. 12월 7일 전원회 상담위원이 강릉시장상(지역사회복지발전부문)을, 29일 탁영주 상담위원이 강원도지사상(여성권익증진부문)을 수상하였다.

구리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 및 형사조정을 4회 실시하였다. 12월 9일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집단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수경,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5회,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12월 16~17일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힐링 캠프 '동행'을 군산리버힐 호텔에서 실시하였다.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출장상담과 조정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2월 9일, 23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협력하는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박태영, 이용원, 전하은, 조은희, 류경재, 박경로, 김미조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매주 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4회 실시하였다. 12월 27일 상담원 역량강화교육을 광양여성상담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9회, 광주시법원 3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6회 실시하였다. 성남시 정보문화센터, 성남중앙도서관, 관내 동주민센터 등에 상담소 홍보물을 9회 배포하였다. 이경숙, 이수연, 김민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7회 실시하였다.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12월 12일 송년의 밤 및 제16대 이사장 이정호(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의 취임식을 실시하였다. 강은혜, 박지현, 박지훈, 박진우, 임용호, 전태우, 정원진, 최강호, 최성중, 한두환, 허정택, 홍성민, 황미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1회, 가사조정을 1회 실시하였다. 12월 14일 개소 29주년 기념식 및 송년회를 실시하였다. 16일 이북5도위원회 전라북도 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일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검찰청, 전주시청 등에 가정상담지 등으로 홍보를 하였다. 정아람, 진희원, 박정교, 박병건, 서보람, 유수연, 이보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서울가정법원위탁 가정폭력행위자 15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12월 5일 가정폭력가해자 18명, 15일 가정폭력피해자 13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김창건, 박진석, 장상현, 홍지혜, 정수경, 노문기, 박은정, 이동건, 백준익, 이영주, 김영옥, 박수열, 고정한, 이수희, 고승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운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1회, 창원지방법검찰청 형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4회 실시하였다. 12월 20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홍강오, 백경석, 민태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11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2월 8일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내방하였고 상담소의 법률구조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관련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지부

2017년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부부관계증진 집단 프로그램을 1회 실시하였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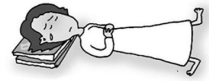


결혼과 인생 (179)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79

새해는 그렇게...



글 | 그림 | 장차현실



감사하거...

2018년 무술년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 개~





구리·남양주지부
정민영 소장

저희 구리·남양주지부에서는 2017년에도 힘든 이웃들과 함께, 의미 있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 함께 하며 보람된 한해를 보내겠습니다. 본부와 모든 지부가족들께서도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군산지부
조미영 소장

한해의 끝자락에서
정유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참 좋은 사람들과
행복했음을 모르고 지나온
시간들이 아쉽네요.

짧고 좋은
고은 시인의 “그 꽃”
내려 갈 때 보았네
올라 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그 순간순간을 잊지 말고
가슴에 보듬어
남은 나날들을 후회 없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본부를 비롯한 각 지부
상담소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군산지부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천지부
한혜빈 소장

2017년 우리나라가 전에 없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
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의 지혜롭고 성숙한
판단력과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성숙
해질 수 있었던 것의 한부분에 소외되고 번
민하는 이웃을 위해 말없이 봉사하는 전국
의 상담소들의 노력들이 분명 녹아져 있었
으리라 믿습니다.

2017년에도 본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지
부 소장님들과 상담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
셨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된 2018년에도
소외된 자에게 한줄기 희망을 주기위해, 어
두운 곳에 작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기위
해 노력하는 우리 상담소들과 임직원들 모
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소식들만 가득하시
길 기원합니다.



성남지부
이정숙 소장

새해를 앞둔 지금
또 1년이라는 여백에 무엇을 어떻게 채
울까 그려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로 차곡차곡 그려 넣
으면, 이웃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들은 나비의 날갯
짓과 같은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커다
란 바람의 원인이 되듯 분명 시간 시간, 하
루 하루, 우리의 일들이 결국은 더 아름다
운 세상, 행복한 삶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
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원지부
박윤선 소장

시간이 무척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모두는 한국 정치사의 절망
과 희망을 함께 공유하며 동시대를 살아가
는 애증의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훗날 우린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변화들 속에서 한국의 안정과 평화
를 추구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공통분모로
작용했던 매우 특별한 한 해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그랬듯이 새로운

해에는 더 많은 기대를 걸게 됩니다.

사람들은 “2018년 무술년”을 무슨 일을 해도 술술 잘 풀리는 해라고 농담 삼아 말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지혜들이 숨어 있는 한국인의 해학은 언제 들어도 마법처럼 우리를 훈훈하게 만듭니다.

2018년, 우리 수원지부도 어느새 2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기관으로 한층 더 진화될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와 전국지부의 모든 임직원들께 새해인사 드립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공익의 철학을 공유하기로 해요”



안동지부
서점애 소장

한 잔의 차를 마시며 눈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해를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이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아무리 좋은 인연도 서로의 노력 없이는 오래갈 수 없고

아무리 나쁜 인연이라도 서로가 노력하면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을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면서

잘난 것만 보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듯이

희망찬 용기와 희망을 함께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이 주렁주렁!

웃음꽃이 피어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익산지부
배은희 소장

새해 아침! 반갑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생의 봄바람이 가득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을 마음의 힘을 기르게 하소서.



인천지부
권오용 소장

국가적으로나 인천지부나 저 개인적으로나 다사다난하였던 정유년 한해를 보내고 무술년 새해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상담과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내담자 개인과 가정의 회복을 돕는 업무를 꾸준히 지속해왔고 그 결과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양성평등 사회를 이룩하는데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국민의 가치관이 다원화된 이 시대에 있어서도 가정은 그 구성원에게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해체됨으로써 인천 지부가 위치한 인천 남구는 2016년도 한해에 자살자가 인구 10만 명 중 37.8명이었고 그 중 남성자살자는 인구 10만 명 중 54.9명으로서 전국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따라서 상담소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해결의 중심에 가정의 회복이 연결되어 있다

는 인식을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담소의 본연의 활동과 사명을 다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가정 이 회복되는데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직원, 회원 여러분들과 가정에 많은 복과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전주지부
유순금 소장

2017년 신년사를 대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를 맞이하게 되다니 가는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상담소를 위하여 성원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월에 서서 지난날을 회상해보면 좋은 분들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2018년은 황금 개띠해라 합니다. 무술년을 맞이하여 성부 되시고 주위로부터 신망도 얻으시는 희망차고 복된 한해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힘들고 지쳤던 마음 모두 떨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중구지부
전오복 소장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함께한 2017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2018년에도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편안하고 따뜻한 상담소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주지부
조순덕 소장

2017년.
개소25주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는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25년을 하루같이 힘든 이웃과 함께”라는 표어로 기금마련행사를 하였습니다. 힘든 기념행사를 즐거운 잔치로 만들어주신 든든한 진주지부 이사장님, 또한 우리라는 이름으로 뭉친 진주지부 고문님과 운영이 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애정과 관심 보내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 및 지부, 자원봉사자님과 선생님들, 늘 감사한 자문변호사님들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18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창원마산지부
서정희 소장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서서 지난해도 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여전히 춥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이 시인의 시처럼 무술년 한해도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더 생각하고, 가정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주지부
홍종호 소장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 가정 법률상담소 본부 및 각 지부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함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온 국민의 마음이 위축되고,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2017년을 뒤로 하고 2018년 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으며 헤르만 헤세의 “모든 시작은 신비롭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큰일, 작은 일, 무겁고 두려운 일, 경험하지 못한 일들... 매일 매 순간 일상으로 반복되는 그 모든 일을 잘 헤낼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이 곧 삶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365일을 허투루 쓰지 않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태백지부
고희정 소장

제가 1991년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어느덧 26년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동안, 가끔 게을리지며 타성에 젖어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생각나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달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도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며 2018년도 웃으면서 일하겠습니다



포항지부
박해자 소장

전국지부 여러분!!
HAPPY NEW YEAR !!
동해에서 제일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고장 호미곶, 포항지부 소장 박해자입니다.
지난해 저희 고장은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이재민들과 물질적 손실을 입었지만 각지에서 보내준 따뜻한 손길로 어려움을 점차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를 맞아 더 올 반가운 것은 그동안 포항지부가 10년 동안 막내로 있어서 동생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송도지부가 새로이 개설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 드리며, 늘 건강하세요.

2017년 11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7년 11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965건으로 본부가 7,014건, 지부가 5,951건이었다.

본부는 6,312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507건·소장 등 서류작성 122건·소송구조 73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026건·화해조정 864건·소장 등 서류작성 27건·소송구조 34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312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7년 10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실혼해소(1.0%→1.1%), 친권·양육권(4.8%→5.2%), 양육비(7.2%→8.8%), 친생부인(1.1%→1.3%), 부양(1.4%→1.5%), 성년후견(1.4%→1.6%),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0.2%→0.3%)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행(0.1%→0.0%)에 관한 상담이 감소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312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32건(17.9%), 전화상담 4,903건(77.7%), 통신 및 인터넷상담 276건(4.4%),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7년 12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5,808			
법률상담 (5,221)			
면접	전화	통신	지상
903	4,054	263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433		102	52

* 2017/12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71,111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7,014	1,132	4,903	276		지상 1	6,312	507	122	73
강릉 (033) 652-9555	168	148	19				167	1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75	68	64	2			134	141		
군산 (063) 442-1560	125	46	37				83	42		
대구 (053) 745-4501	645	245	56	7		출장 184	492	149	4	
대전 (042) 520-5258	211	43	166				209		2	
동해 (033) 535-0188	120	27	90			출장 3	120			
목포 (061) 273-2514	191		189				189			2
부산 (032) 667-2314	345	81	199				280	65		
성남 (031) 707-6661	314	161	64			출장 28	253	57	4	
수원 (031) 243-4600	416	105	128	4		출장 39	276	136	1	3
순천 (061) 753-9910	149	33	113				146	2		1
충구 (02)2238-6554	428	293	135				428			
안동 (054) 856-4200	117	11	52				63	54		
울산 (052) 246-9568	206	17	186				203			3
익산 (063) 851-5113	125	33	82			출장 7	122			3
인천 (032) 865-1120	348	165	176				341	6		1
전주 (063) 244-2930	128	60	41	6	18		125			3
정읍 (063) 535-3705	122	66	51				117	5		
진주 (055) 746-7975	158	23	56				79	69		10
창원·마산 (055) 261-0280	293	115	117	4			236	52	1	4
청주 (043) 257-0088	206	64	82	1			147	50	9	
춘천 (033) 257-4688	406	51	33			출장 322	406			
태백 (033) 554-4004	149	120	17			출장 12	149			
평택·안성 (031) 611-4251	141	35	45			출장 28	108	28	5	
제천 (043) 644-5690	113	29	79				108		1	4
포항 (054) 283-7555	52	6	39				45	7		
지부총상담	5,951	2,045	2,316	24	18	출장 623	5,026	864	27	34
총 상담	12,965	3,177	7,219	300	18	출장 623 지상 1	11,338	1,371	149	107

** 2017/11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77,861건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아내를 폭행하고 채무로 개인회생까지 하게 만든 남편에 대해 이혼결정

법률구조 2017-188

담당 : 공영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6세)와 피고(남, 42세)는 2007년 4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술하에 사건본인(남, 11세)을 두었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식당, 건물청소 일을 하다가, 2016년 2월경 순대국집 식당을 오픈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영업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셔 원고가 술값을 대신 갚아준 일이 많았다. 같은 해 3월경 원고의 친정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피고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친정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화분을 집어 던져 경찰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가 잘못했다고 빌어 그냥 넘어갔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받아 잠적하였고 같은 해 6월경 가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다툼이 생겼다. 피고는 친정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가스통을 가져와 가게를 폭발시킨다고 겁을 주어, 결국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로 원고는 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모든 빚을 떠안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그 동안 미납했던 벌금과 가정폭력으로 구속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2017. 9. 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족의 빚을 대신 해결하다 생활고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199

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36세)의 이모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였고, 이혼 후에도 여전히 고가의 자동차와 가구 등을 구매하다가 막대한 사채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를 안타까워한 신청인의 어머니는 본인의 재산을 빌려주며 도왔으나, 신청인의 이모는 신청인 어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막대한 채무를 지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의 어머니와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만들어 대출을 받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22세에 혼인하였으나 25세에 이혼하여 현재까지 양육비 한번 받은 적 없이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 또한 2007년경 자궁선근증에 의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고에 힘이 들어 2007년과 2012년경에는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손가락 네 곳의 신경과 인대가 끊어져 다시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와 함께 열심히 살아보고자 속눈썹을 붙이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통증이 늘어나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신청인의 낮은 소득으로 신청인의 치료비와 자녀의 양육비를 감당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9. 19.)

채무자를 면책한다.

아내와 자녀를 방임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 결정

법률구조 2017-213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4세)와 피고(남, 51세)는 2013년 2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남, 5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이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임신한 상태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임신기간 중 게임과 도박을 일삼으며 자주 외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거처도 마련해주지 않아 원고는 친정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출산을 앞두고 시댁에 거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댁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원고는 결국 산후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를 폭행 및 감금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원고가 시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린다고 모함하며 향후 어머니의 죽음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는 자신과 사건본인을 폭행하는 피고를 피하여 친정어머니의 집과 모텔, 피해시설 등을 전전하며 힘겹게 생활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서울가정법원 2017. 9.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9. 13. 부터(9월분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26일에 지급한다.
3.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고,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고는 사건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면접교섭의 가능여부 및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원고와 협의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알츠하이머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240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6세)은 외환위기 당시 퇴직을 권유받아 직장을 그만두고, 이후 3년 동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빚만 지고 사업을 정리하였다. 신청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설계사로 열심히 일하였고, 이에 따라 실적도 좋아 수입도 생겼으나, 다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고객들의 보험계약이 줄을 이어 소득이 줄기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소득이 줄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하였고, 대출금 변제로 인해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자 2009년에 소유했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 2013년에 첫째 자녀는 대학생, 둘째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였고, 신청인은 너무 많이 줄어든 수입을 차마 가족에게 알릴 수 없어 학비, 생활비 등을 위해 신용카드 및 대부업체로 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해보고자 2015년경에는 식당의 설거지 일도 하루 12시간씩 하였으나 잦은 실수로 해고를 당하였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 신청인은 병원을 찾았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현재 치매센터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9.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8년 1월 교육강좌

2018년 초·중·고등교사직무연수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전문성 향상과정-교과지도)
- ▶ 연수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 대상 및 인원 :
서울 및 전국 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직 종사자 40명
-2년 이내 (2016년 1월 이후) 동일과정 이수자 학점등재 불가
- ▶ 연수 일정 : 2018년 1월 9일 (화) ~ 1월 11일 (목)
10시 ~ 16시 30분 (예정)
- ▶ 이수 시간 : 15시간 (1학점)
- ▶ 평가 : 없음. 연수과정 80% 이상(12 시간) 출석시 이수증 발급
- ▶ 신청방법 : 신청서를 FAX (02- 780-0485)
또는 이메일 (edu@lawhome.or.kr) 로 전송
신청서는 홈페이지(www.lawhome.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2017년 11월 1일 ~ 마감시 까지
(전화로 확인 요망, ☎ 1644 - 7077, 02-782-3601)
- ▶ 과 정 :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약혼·혼인·사실혼에 관한 법률
 - 이혼·친권에 관한 법률
 - 친자·양자·친양자에 관한 법률
 - 부양에 관한 법률, 성년 후견에 관한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임대차에 관한 법률
 -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 폭력예방교육 등 강의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
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월 8일 / 22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 일시 : 2018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1월 25일(목)	1. 상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
2월 22일(목)	2. 마음의 상처
3월 22일(목)	3. '사랑'은 무엇이며, 그 진화 과정은?
4월 26일(목)	4. 인간 뇌의 특성
5월 24일(목)	5.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6월 28일(목)	6. 다름과 다양성
7월 26일(목)	7. 외도에 대한 대처
9월 27일(목)	8. 분노 조절 장애
10월 25일(목)	9. 과거 관계가 부부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
11월 22일(목)	10. 실제 부부사례를 통한 치료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평화가 간절한 시대입니다.
혼란과 아픔은 지나가는 해와 더불어 가고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 희망과 기쁨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 사회 모든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한 해를 보냈고, 창립 62주년의 해를 맞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그러할 것입니다.

상담소가 이렇듯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격려와 신뢰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하는
상담소와 한 걸음이 되어주시기를 청하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를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빕니다.

2018년 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직원 일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